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7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:민형배·주철현·소병훈

문정복 • 박지원 • 송옥주

이개호 · 정동영 · 강유정

김문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 및 참사 발생 시 '언론취재'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.

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'국가트라우마센터'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'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, 복구,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'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 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. 2022년 4월,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%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.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<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>을 내

놓은 바 있지만,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, 지상파 3 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.

이에 현행법 '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, 복구,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'를 '구조, 복구, 치료,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'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(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"치료"를 "치료, 언론취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	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
설치・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	설치 • 운영) ①
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	
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	
이 조에서 "심리지원"이라 한	
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	
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	2
조, 복구, <u>치료</u> 등 현장대응업	<u>치료, 언론취재</u>
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	
적 피해를 입은 사람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